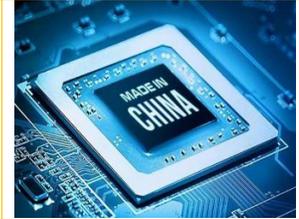


제목을 클릭하시면 코트라 해외시장뉴스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포커스]반도체산업 핵심기술 돌파 현황은? : EDA 산업과 주요기업 상하이무역관(2.18)

중국 반도체산업 체인 고부가가치 창출 <IC 설계 및 제조>로의 산업구조 전환 가속화
EDA 는 반도체 산업의 설계를 위한 기초이자 핵심 소프트웨어 도구 : 글로벌, 중국의 EDA 시장
현황
중국 주요 EDA 기업 동향 및 주요 정책 시사점



[트렌드]세계 최대 흑연 공급망 : 중국의 음극재 및 흑연화 공정시장 동향 상하이무역관(2.18)

신에너지차의 핵심부품 : 리튬배터리 원부자재(인조흑연과 흑연화 공정) 산업 동향
현재 음극재 공정 단계에서 주로 쓰이는 소재는 인조흑연, 중국은 글로벌 음극재 최대 생산국



[기고] 중국 개인정보보호법의 역외 적용 가능성 및 개인정보 경외 이전 관련 컴플라이언스 상하이무역관(2.15)

중국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범위
중국 진출 우리 기업이 주의해야 할 개인정보 경외이전 시 기업 컴플라이언스 사항



- 2022 년 상반기 글로벌일자리대전 안내 ↓
- RCEP 100 활용을 위한 관세행정 지원대책 ↓
- RCEP 1 문 1 답 ↓
- RCEP 실무활용 가이드 ← 클릭
- RCEP 협정문 타결 경과 및 회원국 반응 ← 클릭
- 중국 정보보호 관련 법률인 네트워크안전법, 데이터안전법, 개인정보보호법과 시행령 등 관련 법령 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KOTRA 베이징 IT 지원센터 홈페이지(https://www.koreait.org.cn/bbs/board.php?bo_table=notice&wr_id=132)에 게재해 두었습니다. 세부 법령명을 클릭하면 중국어 원문 및 한국어 번역본이 게재된 게시판으로 자동 연결되도록 되어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KOTRA 중국시장 주간뉴스



구독신청 및 거부 hongdan@kotra.or.kr

| KOTRA 베이징무역관 |

2022 상반기 글로벌일자리대전

- 사업명: 2022 상반기 글로벌일자리대전 (Global Job Fair)
- 기간/장소: '22.4.21(목)~4.27(수) 온라인 화상면접
- 주최/주관: 고용노동부/KOTRA, 한국산업인력공단
- 규모: 해외 우량기업 100개사, 청년구직자 1,000명
- 주요내용: 1:1화상면접, 취업설명회, 멘토링, 이벤트 등

01

참가기업유치

- 참가대상 기업:
외국소재 기업 (로컬, 다국적, 진출기업 등), 국제기구
- ① 구직자 해외취업 선호 국가지역 및 업종 다변화 고려
- ② 장기근속 및 평균연봉이 높은 외국>진출>교포기업 순으로 우선 유치
- ③ 취업자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고 안정적인 일자리 발굴

02

참가기업지원

- 기업소개 e-디렉토리, PR자료 등 제작 및 구직자 대상 홍보
- 1:1 화상면접 지원, 기업 희망시 인사담당자 채용 설명회 연사 참가 등
- (온라인) 1:1 화상면접

03

문의 및 신청

- 문의:
KOTRA베이징무역관
이애령 주임
010-6410-6162(58)
- 신청서 다운:
cafe.naver.com/kotra_beijing (2022 상반기 글로벌일자리대전 참고)
- 신청서 접수:
aeryeong@kotra.or.kr
로 2.28(월)까지 접수

[여기 클릭](#)



RCEP 100% 활용을 위한 관세행정 지원대책

2021. 12. 7.

관 세 청

I 지원대책 추진방향

수출입기업 대상 「RCEP 100% 활용 지원 캠페인」을 추진하여
정책 수요자가 체감할 수 있는 RCEP 맞춤형 관세행정 서비스 제공

RCEP 활용지원 체계 구축

RCEP 100% 활용지원 대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전청·국내외 기관을 포괄한 전담조직(본청·세관) 구성

- ▶ [본 청] RCEP 활용지원단 ⇨ 이행 총괄
- ▶ [세 관] RCEP 활용지원 센터 ⇨ 현장 지원
- ▶ [법정부] 관계 부처·유관 기관과 협의체 구성 추진

① 인증수출자 자율증명 활용 지원

RCEP 원산지 제도의 핵심인
인증수출자 자율증명 활용도 제고

- ▶ 협정 발효 전
인증수출자 지정 특례 조치 실시
· 사전 신청·심사 ⇨ 발효 즉시 자율증명 활용
· 심사 절차 대폭 간소화(既 협정 인증업체)
- ▶ 인증수출자 DB 구축 및
회원국간 정보 공유

② 수요자 맞춤형 RCEP 활용 지원

관세행정 전문성을 활용한
현장 중심 지원 서비스 제공

- ▶ 세관별 RCEP 활용 밀착 지원
· 컨설팅, 설명회·간담회, 민간 전문가 양성
- ▶ 1국 다협정 선택적 FTA 활용 지원
· 협정국별 PSR·최적세율 등 정보 제공
- ▶ RCEP 원산지 판정 지원(FTA-PASS)

③ 역내국간 관세협력 기반 구축

세관당국간 협력 체계 구축하여
RCEP 이행 현안에 대응

- ▶ 일본과 RCEP 이행협력 MOU 및
세관 당국간 협력회의의 정례화
- ▶ 거점국가 중심 관세외교 강화,
권역별 핫라인 구축
- ▶ RCEP 비준국 대사 초청
간담회 개최

④ RCEP 집행 인프라 정비

국내입법 지원, 증명절차 간소화,
e-CO 확대 등 집행 기반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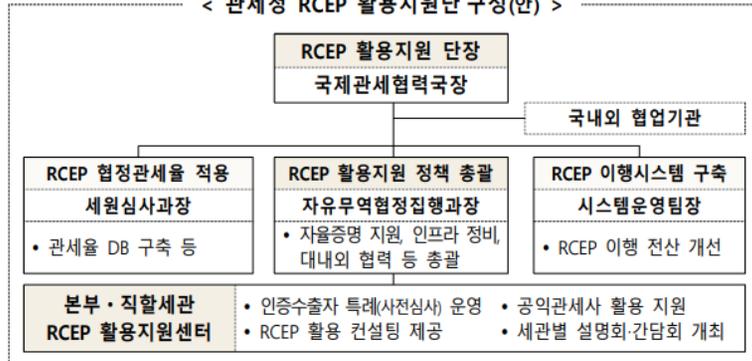
- ▶ RCEP 국내법령 정비 발굴·건의
- ▶ 협정 이행지침 마련·공개
- ▶ 원산지증명 절차 간소화
· 간이확인 법제화, 간편인정 확대 등
- ▶ 역내 전자적 원산지증명 교환 확대

II 이행 체계

- 본청에 「RCEP 활용지원단」, 전국 본부·직할 세관*에 「RCEP 활용지원 센터」(권역내 세관 포함 총 146명) 설치

* 인천세관, 서울세관, 부산세관, 대구세관, 광주세관, 평택세관

< 관세청 RCEP 활용지원단 구성(안) >



III 관세행정 지원대책

1 인증수출자 자율증명 활용 지원

- [인증 특례] RCEP 발효 전 인증 요건 충족 여부를 사전에 심사하여 발효 즉시 인증수출자 원산지 자율증명 제도 활용 지원



- (접수) 관할지 본부(직할)세관을 통해 RCEP 품목별인증수출자 신청

< 인증수출자 특례지원 세관 연락처 >

구분	연락처	이메일
인천본부세관	032-452-3169	incheonsupport@korea.kr
서울본부세관	02-510-1387	FTA010@korea.kr
부산본부세관	051-620-6963	busansupport@korea.kr
대구본부세관	053-230-5192	daegusupport@korea.kr
광주본부세관	062-975-8195	ftafta071@korea.kr
평택직할세관	031-8054-7175	fta016@korea.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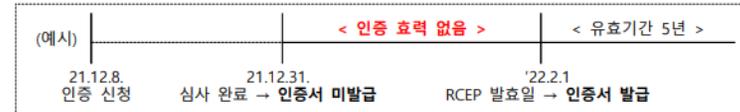
- (심사 간소화) RCEP-중·아세안·베트남 협정간 원산지결정기준 분석을 통해 既 인증수출자는 간이한 심사* 절차 적용

☞ 既 인증 협정과 동일 품목(HS 6단위기준)으로서 품목별원산지결정기준(PSR)이 완화(850개 대상품목 별도 공지)된 경우 인증 심사 시 제출서류 간소화
 [現] 원산지소명서 및 입증서류(BOM, 제조공정도 등) 등 14종의 서류 제출
 [改] 원산지소명서, 협약서, 원산지관리 전담자 증빙자료 등 3종 ⇨ 심사 생략

- (인증서 발급) 인증 효력은 협정 발효 이후에 부여

- (인증특례 신청기간) '21. 12. 8. ~ '22. 1. 28.

※ 인증 신청서 접수 시 20일 이내 심사(보정기간(5~10일)은 제외함)



- [DB구축] RCEP의 인증정보 공유 의무* 이행, 원산지 자율증명 활용 수출 지원을 위해 인증수출자 정보 DB 구축 및 회원국간 공유

* [공유정보] 인증수출자의 상호, 주소, 인증 번호, 발급일 및 만료일(가능한 경우로 한정), 최소 HS2단위 수준의 인증 적용대상 상품목록 등

- [홍보·안내] 기업의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인증수출자 자율증명 가능한 RCEP 회원국 및 적용 시점을 신속히 안내·공지

2 수요자 맞춤형 RCEP 활용 지원

- [현장지원] 세관 「RCEP 활용지원 센터」 중심으로 **컨설팅, 설명회·간담회** 등 실시하고, **RCEP 전문 관세사**(민간 전문가) 양성·활용
※ 수출입기업, 관세사 대상 RCEP 활용 순회설명회 개최(본청·본부세관 주관)
- [최적협정] 1국 **다협정** 환경에서 기업의 **FTA 활용이익 극대화**를 위해 회원국별 **PSR·최적세율** 등 정보 제공
☞ 중국(APTA, 한-중, RCEP), 베트남(한-아세안, 한-베, RCEP), 인니(한-아세안, 한-인니, RCEP)
- [FTA-PASS] 시스템을 통해 **RCEP 원산지 판정, 서류 발급** 등 지원
☞ 관세차별 대상 물품의 원산지판정 추가요건 관리를 시스템 내에서 지원 등
- [FTA포털] RCEP의 특징·개요, **협정 활용방안, 일본 통관제도***, RCEP 활용 **유망산업 및 비즈니스 모델**(다국누적 활용) 등 특화정보 제공
☞ 수출입신고 절차, 관세부과, 품목분류체계, 관세율, 일본이 체결한 FTA 등

3 역내국간 관세협력 기반 구축

- [韓日 협력] 신규 FTA 체결국인 **일본과 「RCEP 이행협력 MOU」**로 이행협력 기반을 마련하고, 「**세관간 협력회의**」 정례화(年 1회)
☞ (효과) 원산지규정·검증·통관 등에 대한 상호 행정지원과 협력 강화, 실무 이행 현안 해결 및 정보 공유, RCEP 원산지소위에서 공동 대응
- [관세협력] **거점국가**(관세관 파견국 등) 중심으로 **관세외교를 강화**하고, **권역별 핫라인**을 구축하여 이행 이슈 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제 가동
☞ (효과) RCEP 주요 쟁점 관련 협정 상대국별 이행 동향 파악, 협정 상대국의 통관애로 등 이행 이슈 발생 시 이행위·영상회의 등을 통해 적기 대응
※ 협정 발효 前 RCEP 회원국 대사 초청 간담회 개최 추진

4 제도적 기반 마련 등 집행 인프라 정비

- [국내입법 지원] 집행 근거 명확화, RCEP 활용 편의 제고를 위해 원산지증명서식 법제화 등 **국내법령 정비** 방안 발굴·제안
☞ RCEP 원산지증명서식 법제화, 원산지증빙서류 서식 등 정비, 인증수출자 DB 구축 근거 명시, 연결원산지증명서 발급 근거 입법화 등
- [이행지침] 협정 발효 초기 통일된 **관세행정 집행**과 주요 쟁점별 명확한 **적용**을 위해 실무적 절차를 규정한 **협정 운영지침 제정**
※ RCEP 회원국간 이행협상 결과 등을 반영하여 '22.1월초 공개 예정
- [관세차별] **관세차별 적용** 물품에 대한 원산지 판정·입증 부담 최소화 방안 마련, 기업이 활용하기 쉽도록 **가공하여 공개**
☞ RCEP은 동일 품목이라도 회원국(원산지국가)에 따라 양허 관세율이 차등 적용(관세차별) 될 수 있으며, 동 물품은 원산지국가 결정 시 추가요건 이행 요구
- [e-CO 확대] **EODES 개선**(既 구축 국가), **조희형 e-CO**(저비용·고효율) 도입으로 원산지증명서 공신력 제고 및 디지털 무역기반 고도화
※ RCEP 회원국별 원산지증명서 사본(예: PDF 등) 인정기준 입수·공개 예정
- [증명절차 간소화] 국내제조 사실로 원산지를 인정하는 **간이확인 제도 법제화** 및 혜택 확대, **간편인정 대상 품목 확대** 등
☞ (RCEP 활용) 對日 주력 수출물품 등 원산지증명 간소화 대상 신규 발굴

IV 성과 모니터링·환류

- RCEP 발효 後 일정기간(월·분기) 협정국별 교역량, FTA 활용률 변동 추이를 **모니터링**하고 국내이행 지원대책에 대한 **성과분석** 실시
 - RCEP 집행 과정에서 발굴된 **현장애로** 등은 **정책 개선***에 반영
- * 이행협상 의제 상정, 세관 당국간 실무협의, 법령개정 등 국내 제도 반영 등

- RCEP 활용 1문 1답 -

Q1. RCEP이란 무엇인가요?

-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10개국과 한·중·일 3개국, 호주, 뉴질랜드 총 15개국 간의 관세장벽 철폐를 목표로 하는 역내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이자 세계 최대규모의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중국, 일본, 호주, 싱가포르 등 10개국은 2022년 1월 1일 발효, 우리나라는 2022년 2월 1일에 발효될 예정입니다.

Q2. RCEP의 특징과 체결의의는 무엇인가요?

- RCEP은 세계 최대 규모의 메가 FTA로서, 우리나라 최초의 다자간 협정이자 일본과의 첫 FTA 라는 특징이 있으며
- 세계최대 규모의 경제통합체 형성으로 우리 기업의 신규 시장 확대 및 안정적인 경제성장의 기반을 마련하는데 그 의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Q3. RCEP만의 특별한 기대효과는 무엇인가요?

- 아세안, 중국, 베트남, 호주 등 기존 FTA 체결국과는 중복하여 협정이 체결되는 만큼, 협정별 양허세율을 비교하여 가장 유리한 협정을 선택, 적용할 수 있어 관세혜택이 확대 됩니다.
- 또한 RCEP은 우리나라와 일본이 체결하는 최초의 자유무역 협정으로 발효시 일본과의 무역에서 특혜관세 혜택을 누릴수 있게 됩니다

Q4. RCEP이 기존 체결된 FTA 보다 유리한 점은 무엇인가요?

- 누적기준을 활용해 수출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누적기준은 원산지 특례기준 중 하나로 RCEP 협정 상대국산 원재료를 우리나라 원재료로 간주하는 것이며, 협정 발효전 역외산 판정된 제품이 RCEP 발효 이후에는 누적기준을 활용하여 역내산으로 판정될 수 있습니다.

사례) 일본산원재료를 수입, 한국에서 완제품을 생산, 중국으로 수출하는 업체
- (한-중 FTA) 일본산 원재료는 비원산지 재료에 해당하여 특혜관세 배제
- (RCEP) 일본산 원재료를 원산지재료로 인정받아(누적기준) 특혜관세 적용

Q5. RCEP 원산지증명은 어떤 방식으로 하나요?

- RCEP 원산지 증명서 발급방법은 ①수출자, 생산자 또는 그 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수출당사국의 발급기관(세관, 상공회의소)이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발급과 ②인증수출자가 직접 원산지 신고서를 발급하는 자율발급의 두가지 방법을 병행하고 있으며,
- 수출자는 상기 2가지 방식중 선택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Q6. RCEP 원산지신고서는 누구든지 자율발급 할 수 있나요?

- 자율발급의 경우 수출자의 권한당국에서 인증한 「인증수출자」만 원산지신고서를 발급 할 수 있습니다. 인증수출자가 아닌 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자율발급은 협정에 근거하여 발효 후 10년(단,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는 20년) 이내에 이행될 예정입니다.

Q7. RCEP 인증수출자는 어떻게 취득할 수 있나요?

- 원산지관리능력을 비롯해 기타 자격 요건을 갖춘 수출자는 관세청전자통관시스템(UNI-PASS) 또는 서면으로 인증 희망 수출업체의 관할 본부(직할)세관(서울·인천·부산·대구·광주본부세관 및 평택직할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에 인증을 신청하면 됩니다.
- 신청 받은 세관장은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인증 요건 심사를 거쳐 인증수출자 지위를 부여하게 됩니다. 기타 인증 요건과 관련 자세한 사항은 인터넷 누리집 「관세청 FTA포털」 또는 각 지역 수출입 기업지원센터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관세청 FTA 포털(<https://www.customs.go.kr/ftaportalkor>)

Q8. RCEP 인증수출자 신청과 관련하여 안내를 받을수 있나요?

- 인터넷 누리집 「관세청 FTA포털」에 RCEP 활용정보, 인증수출자 제도 관련 참고자료가 게시되어 있으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에 문의하시면 무료로 대면 및 유선 컨설팅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관세청 FTA포털(<https://www.customs.go.kr/ftaportalkor>) ⇨ FTA 일반현황 ⇨ RCEP

Q9. 인증수출자 신청 시 서류심사는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 얼마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는지 궁금합니다

- 관세청전자통관시스템(UNI-PASS)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원산지소명자료 등 서류를 제출받아 신청 품목의 원산지결정 기준 충족여부 등을 심사하여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증서를 교부합니다.

Q10. 인증수출자 심사 시 서류심사 외에 현장심사도 진행하나요?

- 기본적으로 서면심사로 진행되지만 제출서류가 미비하거나 원산지결정기준의 충족여부를 심사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면 인증을 신청한 자의 사무실, 공장, 사업장 또는 주소지를 방문하여 인증요건과 원산지를 확인하는 현지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Q11. 인증수출자의 유효기간과 연장방법에 대해 알려 주세요

-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유효기간은 인증일부터 5년이며 인증 연장을 원하는 경우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인증받은 세관에 인증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해야 합니다. 해당 기간 내에 연장 신청을 하지 않은 때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인증 효력이 상실된 것으로 봅니다.

Q12. 원산지관리전담자로 지정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 원산지관리전담자란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심사기준인 원산지 증명능력을 갖춘 관리전담자를 말하며, 해당 업체의 소속직원으로서 원산지관리사 자격증 소지자,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원산지 관리에 관한 교육을 일정시간이상 이수한 자 등 요건을 갖춘 자로 지정하여야 하며, 외부전문가(변호사, 관세사, 공인회계사)도 지정할 수 있습니다.

Q13. RCEP 발효와 동시에 인증수출자 혜택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관세청은 '21.12.8일부터 '22.1.28일까지 RCEP 발효 즉시 수출업체가 동 협정을 활용할 수 있도록 RCEP 인증수출자 인증 특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인증수출자 인증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 현재 한-중국·아세안·베트남 품목별 인증수출자이고 RCEP 인증심사 간소화 품목(850개)에 해당하는 경우 E-mail(daegusupport@korea.kr)로 간이인증을
 - 인증심사 간소화 품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으로 일반인증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 인증심사 간소화 품목은 관세청 FTA포털(<http://www.customs.go.kr/ftapotalkor>)과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http://unipass.customs.g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Q14. RCEP 인증수출자 인증 특례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 간이 인증 신청서, 원산지소명서, 확약서 등 자료를 구비하여 인증 희망 수출업체의 관할 본부(직할)세관(서울·인천·부산·대구·광주본부세관 및 평택직할세관) RCEP 활용지원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동 신청에 따른 RCEP 품목별 인증수출자 특례 인증은 협정이 발효된 날로부터 유효하며, 인증 유효기간은 발효일로부터 5년입니다.